



대구대학교 - 합천군

상호 협력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합천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관학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사랑·빛·자유’의 건학이념 실현과 소통하는 공감합천 농업과 마을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각자의 핵심역량과 인프라등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복지 증진 및 인적자원교류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농산업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술사업화, 교육, 창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과 HACCP컨설팅, 교육 및 농산업 분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정책 발굴 및 합천유통 등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관한 협력 사항
4. 마을기업 및 농업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관학협력 제반 사항

제 3 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선정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방향을 정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양 기관의 업무상, 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

제 6 조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합의하에 효력을 정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은 각각의 역할 및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업무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31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 총장 김 상 호

김 상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합천군수 문 중 회

문 중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